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감염취약계층 확대 등 》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04호)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60호)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03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5
1. 감염취약계층 확대 등(이재정의원안)	5
2. 역학조사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백혜련의원안) ·	11
3.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급성호흡기감염증 추가(전용기의원안) ...	20

I. 개요

1.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0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2.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4.
- (3) 회 부 일 : 2025. 8. 5.

나.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노출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역학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의4제5항).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안 제34조의2제1항).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76조의7 신설).

3.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0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8. 6.
- (3) 회 부 일 : 2025. 8.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병률이 높고 감염확산이 잦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인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병률 조사 결과, 11.7%~21.5%로 나타남.

그런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그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경우, 동 기간 유병률이 11.7%~20.1%로 나타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II. 검토의견

1. 감염취약계층 확대 등(이재정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u>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u> (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 ----- ----- ----- <u>어린이, 노인, 장애인</u> <u>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u> ----- ----- ----- ----- ----- ----- ----- -----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u>취할</u> <u>수 있다.</u> ②·③ (생 략)	----- -----<u>취하</u> <u>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사항

-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재량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서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라. (생략)
 3.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참고로 2024년말 기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약 28만명으로, 전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수 1,740만명의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자 현황 >

(2024년말 기준)

구 분		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질환자	노숙인 등	결핵· 한센	지역 자활 센터	사회 복지관	야간 보호
전체	시설수	37,790	25,929	6,489	4,074	421	138	6	250	483	28,954
	생활자	278,387	222,435	12,489	27,074	9,680	6,501	208	-	-	-
생활	시설수	9,413	6,495	963	1,549	300	100	6	-	-	-
	현원	278,387	222,435	12,489	27,074	9,680	6,501	208	-	-	-
이용	시설수	28,377	19,434	5,526	2,525	121	38		250	483	28,954

* 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유동적이므로 집계가 어려워 생활시설 위주로 이용자 집계

* 자료: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어린이, 노인, 장애인 통계자료(인구수) >

(2024년 기준, 단위: 명)

계	어린이 -만12세이하-	노인 -만65세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1,7402,082	4,513,944	10,256,782	2,631,356

*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4호 연령기준 동일적용

* 자료: 보건복지부(*KOSIS 주민등록통계 등)

□ 2021년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돌봄인력 등에 대하여 마스크 약 8,000만장을 배부한 바 있음.

< 2021년 보건복지부 마스크 배부 실적 >

지급시기	지원 대상	물 품	수 량	예산	
				금액	산출내역
2021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감염병 확산 방지체계 구축(마스크))	저소득층	마스크	440만장	14억	A업체 110만장*310원=341백만원 B업체 110만장*310원=341백만원 C업체 220만장*330원=726백만원
2021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6,948만장	313억	868,450명×450원/매×80매/인= 31,264백만원
2021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목욕장업 마스크 지원)	전국 목욕장	마스크	620만장	3.5억	마스크 (50원*620만장)+배송비(3,000원* 6,200개소)+기타 운영비 등 10백만원=350백만원

- 한편,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감염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감염병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 아울러 필요조치 의무화는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국민 보호는 당연한 책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특히,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에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조 제1항에서 굳이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 한정할 필요도 적은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의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 중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동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와 중복되므로 정비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감염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제34조제2항제5호의2에 최초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으로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에서 모든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가 있지만 현행 하위법령에서 감염취

약계층의 범위, 지급절차를 정하는 형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감염병 위기 ‘주의’ 단계부터 방역 물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방역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재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및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방역 물품 등 지원은 감염병 전파의 심각성 및 대응상황, 의학적 관점에서의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역학조사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백혜련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관한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감염병 위기 시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이 공개될 때 이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역학조사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76조의2 및 안 제7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 ----- -----

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할-----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염병 예
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 달성-----
-----.

⑦ -----

내용을-----.

1.·2. (현행과 같음)

3. -----감염병 예
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

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u>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u> <u><신 설></u> ⑧ · ⑨ (생 략) <u><신 설></u>	<u>하여 필요한 경우-----</u> <u>-----목적 달성-----</u> <u>-----</u> <u>4. 제76조의3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u> ⑧ · ⑨ (현행과 같음) <u>제76조의7(역학조사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① 제18조 및 제76조의2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u> <u>1.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u> <u>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u> <u>3.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u> <u>②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주요 검토사항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행하였던 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정도가 과도하였고 사생활의 비밀도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1월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 수집 또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사항 >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구체적 인물이 특정되지 않도록 **‘감염발생 추정 장소와 그 장소를 방문한 시간’**으로 개정,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공개할 정보의 종류와 사유를 설명하도록 규정 마련(제34조의2제1항)
-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정보 요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 요청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요건 개정(제76조의2)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서 ‘그 밖의 단체’를 삭제함(제76조의2제3항)
-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수집된 정보의 파기 기한과 예외 사유,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제76조의2제6항)

- 개정안은 위와 같은 지적을 반영하여 1) 역학조사 시 제출받은 자료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2)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 공개 시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파기 요구권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3)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이는바, 검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및 개정안 반영내용 >

항목	주요 권고 내용	개정안 반영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 질병청장이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시한을 명확하게 규정	■ (안 제18조의4제5항) 제3자를 통한 역학조사 시 획득한 개인정보의 보유기한, 파기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질병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정보 사용 목적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안 제76조의2제6항) 이용 목적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목적 달성 즉시 폐기토록 함.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정보 열람, 정정, 삭제 요구 등)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	■ (안 제76조의7)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를 준용, 역학조사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환자등의 정보공개	■ 감염병환자 정보공개는 구체적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동 경로 공개하고, 정보 공개 전에 정보주체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 마련 필요	■ (안 제34조의2) 정보 공개 전후 정보주체에게 고지토록 함.
감염병 의심자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의심자에 대한 정보요청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요건 개정 필요	■ (안제76조의2제1항) 제3자를 통한 정보요청 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토록 함.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2021년 3월 28일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34조의2제1항 단서 신설)하여 정보공개 대상에서 성별, 나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성명, 주소 등)는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사생활 침해 문제는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 ----- ----- ----- ----- ----- ----- ----- ----- ----- <u>공개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u> ----- ----- -----.

□ 다음, 개정안(제76조의7)에서는 역학조사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면서, 그 권리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권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6가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개정안과 비교 시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협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비교 >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의3(역학조사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① 제18조 및 제76조의2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u>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u> 2. <u>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u> 3. <u>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u> ②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 그 외, 안 제76조의2제7항제4호 ‘제76조의3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중 ‘제76조의3’은 ‘제76조의7’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변경도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안 제34조의2제1항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는 동 조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성별, 나이, 성명, 거주지 등이 제외되어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가명정보로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

3.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급성호흡기감염증 추가(전용기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급성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17. (생략) <u><신설></u> <u>18. (생략)</u> ②·③ (생략)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 ----- ----- ----- ----- --. 1. ~ 17. (현행과 같음) <u>18. 급성호흡기감염증</u> <u>19. (현행 제18호와 같음)</u> ②·③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사항

- 현재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바, 법률에 직접 규정된 것이 홍역, 백일해 등 17종이고, 법률 위임에 따라 질병관리청 고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2종으로, 총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19종임. 이 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이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 2. 폴리오 / 3. 백일해 / 4. 홍역 / 5. 파상풍 / 6. 결핵 / 7. B형간염 / 8. 유행성이하선염 / 9. 풍진 / 10. 수두 / 11. 일본뇌염 /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3. 폐렴구균 / 14. 인플루엔자 / 15. A형간염 /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 ③ 생략.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 고시)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 한편, 개정안은 이러한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급성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질병관리청(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특별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 발생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증상을 조절하는 단기간의 약물치료로 호전되고, 대부분 특별한 합병증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드물게 바이러스성 폐렴이 발생하면 중환자실에

서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적극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음.

- 참고로,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전국 병원급 표본감시기관(221개소, '25년 기준)에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 중으로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 약 7만 3,000명, 2024년 약 7만 6,000명, 2025년 8월(32주) 기준 약 3만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음. 그 중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utial Virus)는 2023년 1만여명, 2024년 8,000여명, 2025년 8월 9일 기준으로 4,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음.

<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현황 >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9.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12,358	13,578	6,902	7,225	13,479	4,004	1,265	1,591	4,373	27,285	1,726
클라미디아 페렴균 감염증	657	461	195	259	335	175	184	240	222	284	135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5,996	12,732	6,663	13,627	15,162	2,283	1,092	1,656	13,067	3,254	2,043
사람 보카 바이러스 감염증	2,875	4,605	4,581	5,446	6,426	1,309	3,216	3,004	3,464	2,293	1,512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5,846	7,035	7,971	10,586	12,804	707	4,415	3,763	10,843	7,739	4,085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8,736	13,606	14,450	16,227	11,897	4,390	743	8,405	11,381	8,976	4,160
리노 바이러스 감염증	15,453	18,993	21,467	25,896	29,653	7,307	6,929	8,646	19,663	18,342	8,163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증	3,040	4,338	4,388	7,052	6,951	782	34	3,461	5,268	4,223	4,585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495	5,083	3,825	7,084	4,376	3,303	126	1,673	5,001	3,321	3,556
계	56,456	80,431	70,442	93,402	101,083	24,260	18,004	32,439	73,282	75,717	29,965

* 2025년은 32주차(8.9일) 기준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산출: 25.8.18.)

** 자료: 질병관리청(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 감염병통계 / 표본감시감염병 / 급성호흡기감염증)

- 다만, 급성호흡기감염증은 감염 시 치명도나 중증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관계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울러, 급성호흡기감염증 9종 중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것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1종만 개발되어 국내에 허가되어¹⁾ 있다는 점과 필수 예방접종 대상 확대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도입 첫해 3조 8,119억원 등 5년간 연평균 9,4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 >

구분	종류
세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1종에 대하여만 아렉스비(Arexvy)가 60세 이상 성인 대상 예방백신으로 국내에 허가되어 있음.

- 개정안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필수예방접종 추가는 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검토와 함께 백신 수급 가능성, 예산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입 결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 분	제시 의견
기획재정부	- 필수예방접종 지정은 인구구조 변화, 질환의 특성, 백신의 감염병 예방 효과, 백신의 비용-효과성 및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 - 법 개정 이전에 급성호흡기감염증의 필수예방접종 지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
대한 한 의사 협회	-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개정안에 찬성함. - 다만,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지원대상 명시

문 의 처

02) 6788-5501